



제434회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EBS의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 설명회 근거 마련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44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EBS의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 설명회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25.

다. 회 부 일 : 2026.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진학 관련 입시설명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관련 행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진학 및 학습 전략 관련 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6호).

Ⅲ. 검토의견

1. EBS의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 설명회 근거 마련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함)의 업무 범위에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 설명회(이하 “입시설명회”라 함)를 명시
 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호).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업무) ----- -----.
1. ~5. (생략)	1. ~5. (현행과 같음)
6. <u>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u> 및 국제교류	6. <u>진로·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u> <u>한 설명회·상담 등 교육 관련</u> <u>행사 등의 주관</u> 및 국제교류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법¹⁾에 따라 EBS는 텔레비전·라디오·위성 교육방송 실시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사업 또한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현행법 제7조제6호에 따라 EBS가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한 입시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연도별 입시설명회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설명회 개최 건수	집행 예산*
2016	35건	-
2017	50건	285.00
2018	67건	355.00
2019	79건	270.00
2020	70건	245.25
2021	53건	516.38
2022	15건	90.00
2023	8건	90.00
2024	24건	134.98
2025	27건	121.5
평균	42.8건	210.81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4.)

* 2021년의 경우 온라인 입시설명회까지 포함하여 예산 증가했으며,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음

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 그런데, 입시설명회 관련 사업 근거가 단순히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으로 규정된바, 현행법에 그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입시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EBS의 공교육 보완 기능과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 기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임.
- 특히, 「대한민국헌법」 제31조²⁾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³⁾으로 설립된 EBS가 학습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이나, 입법의 추상성·일반성에 따른 법 집행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관한 방미통위 및 EBS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2)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행 규정으로도 교육 분야 전반에서 필요한 행사 추진이 가능하나, 공교육 보완 기능 강화 등을 위해 EBS의 구체적인 사업의 예시와 그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EBS는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한 설명회·상담’이 당초 ‘교육 관련 행사’에 포함되어 있기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 관련 행사’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를 종합하면, EBS가 이미 입시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있다는 점, 학교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EBS가 헌법에 따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방미통위 및 EBS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